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693

발의연월일 : 2026. 4. 29.

발 의 자 : 문진석・이정문・이재관
강준현・김병주・박희승
안태준・전현희・윤준병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유치원에 교원의 자격・임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교사의 휴가・병가 사용을 보장하는 규정과 그 사용으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교사 배치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교사가 감염병 감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에도 대체교사 확보의 어려움으로 병가 사용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으며, 원장이 교사의 휴가・병가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사의 휴가・병가 등의 사용 시 대체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교사의 휴가・병가 등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교사의 법정 휴가권과 건강

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인 대체교사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유아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법률 제 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6(교사 휴가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등) ① 원장은 교사가 휴가·연가·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하 “휴가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가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이하 “대체교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교사 배치의 지원을 위하여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교사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제2항 본문 중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만,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교사의 휴가등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2조의6(교사 휴가 보장 및 대체교사 배치 등) ① 원장은 교사가 휴가·연가·병가 또는 육아휴직 등(이하 “휴가등”이라 한다)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휴가등으로 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교사(이하 “대체교사”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대체교사 배치의 지원을 위하여 대체교사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대체교사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대체교사의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 기관이 정한다.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7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5조(과태료) ① (생 략)	제3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에 따른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서 삭제>
<신 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다만, 유아 건강검진을 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안내(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제출 요구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2. 제17조의3에 따른 응급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3.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교사의 휴가등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그 사용을 이유로 해당 교사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